

보도시점 (온라인,지면) 2026. 1. 29.(목) **국회 본회의 의결 시**

모바일신분증, 실물과 ‘법적으로도’ 동일합니다 「전자정부법」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

- 모바일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짐을 명문화
- 위변조 등 악용 시 ‘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’ 처벌 강화

-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모바일신분증 발급·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와 모바일신분증의 부정사용 및 위·변조 등을 예방·근절하기 위한 처벌 규정을 담은 「전자정부법」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.
- 이번 개정에서는 특히 ‘모바일신분증’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짐을 명시했다.
- 그간 모바일신분증은 주민등록법 등 일부 개별법에 근거를 두어 운영되어 왔는데, 이번 개정을 통해 온·오프라인 어디서나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모바일신분증만으로 신원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.
- 한편, 모바일신분증 발급기관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, 여러 기관에서 모바일신분증을 중복 투자없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‘모바일신분증 공통기반’ 구축 및 운영 근거도 신설해 정부 차원의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하였다.
- 아울러, 모바일신분증 도입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악용 방지 규정도 법적으로 강화했다.
- 그간 모바일신분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위·변조한 자 등을 처벌할 근거가 없어 모바일신분증이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.

- 이번 법률 개정으로 모바일신분증을 부정 사용한 자, 위·변조한 자, 위·변조된 모바일신분증을 사용한 자와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, 또는 이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.
- 특히, 모바일신분증뿐만 아니라 모바일신분증의 이미지 파일 등을 부정 사용하거나 위·변조한 자에게도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어 다양한 악용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-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은 “이번 법률 개정으로 모바일신분증이 명실상부 하게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”고 강조하며,
 - “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핸드폰만으로도 간편하게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디지털 신원확인 생태계를 조성하고, 나아가 AI 민주정부에 모바일신분증이 단단한 초석이 되도록 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인공지능정부실 국민맞춤서비스과	책임자	과 장	주경애 (044-205-2741)
		담당자	사무관	민선미 (044-205-2751)
	인공지능정부실 인공지능정부정책과	책임자	과 장	조원갑 (044-205-2702)
		담당자	사무관	장영훈 (044-205-2710)



참고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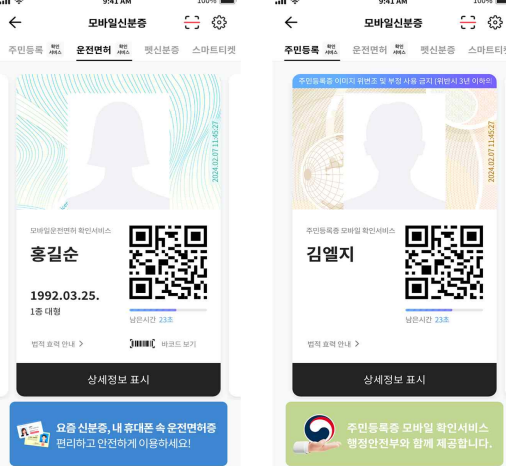
모바일신분증과 실물 신분증 비교

구분	실물 신분증	모바일신분증
법적근거	▶주민등록법, 도로교통법 등 개별법	▶개별법에 근거하여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 인정
발급	▶주민센터 방문, 담당자 대면 확인 후 발급	▶(QR) 주민센터 방문, 대면 확인 후 모바일 신분증앱으로 QR 촬영하여 발급 ▶(IC신분증) 대면 확인 후 IC신분증 발급, IC신분증을 휴대폰에 태그하여 발급
휴대	▶지갑 등 휴대 불편, 분실 위험 높음	▶본인명의 휴대폰 1대에 암호화 저장
사용	▶주소,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노출 ▶온라인에서 사용 곤란 ▶소지자가 제시하여 육안 확인 후 사용	▶필요한 정보(성인인증 등)만 제공 ▶온·오프라인에서 편리한 사용 가능 ▶사용 시 생체인증, 비밀번호 입력을 강제하여 정보주체 본인만 사용
진위확인	▶관공서, 은행 등 창구에서 스캐너로 확인	▶누구나 검증앱으로 소지자가 제출한 QR 코드를 촬영하여 위변조여부 확인
갱신주기	▶없음* (분실·훼손 시 재발급)	▶보안을 위해 3년마다 주기적 갱신
분실	▶분실·도난 신고 시 도용·위변조 위험 높음	▶분실·도난 신고 시 자동 사용 정지

* 실물 신분증 갱신주기 신분증별 상이

참고2

모바일신분증과 신분확인서비스 비교

구분	모바일신분증	신분확인서비스
UI		
법적 효력	■ (신분증 ○) - 각 소관 법령에 따라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신분증 * 이동통신기기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신분증	■ (신분증 X) - 이동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성명·사진·주민번호·주소를 확인하는 서비스 * 소관 법령에도 “확인하는” 서비스라고 명시되어 있고, 신분증은 아님
발급 수준의 신뢰성	■ (대면 발급) - 신분증이므로 발급 시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엄격한 대면확인 필요	■ (비대면 발급) - 정부24, PASS 앱 등에서 휴대폰 본인 확인 → 단말인증 → 주민증 정보 입력 후 발급
사용수준	■ (안면인증을 통한 안심인증) - 금융거래 등 중요 업무 사용 시 사용자의 안면정보를 통해 인증하여 사용 * 금융거래 시 실지명의 확인증표임 (금융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) * 안면인증을 통한 엄격한 본인확인 대면·비대면 서비스에서 활용	■ (비밀번호 및 지문) - 휴대폰 비밀번호 및 지문을 활용하여 인증 후 사용 * 금융거래 시 실지명의 확인증표로 사용 불가 * 오프라인(편의점, 병원, 등)에서만 사용
제공 앱	(정부앱)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(민간앱) ^(1차)삼성월렛, ^(2차)네이버, 카카오뱅크, 토스, NH올원뱅크, KB스타뱅킹, ^(3차 개발중)우리WON뱅크, 신한SOL뱅크, 하나원큐, I-ONE 뱅크	정부24, PASS, 삼성월렛, KB스타뱅킹, 우리WON뱅크, 신한SOL뱅크 등